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자로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
 - 가. 원고는 소외 부 망 김□□이 20○○. ○. ○. 사망하여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20○○. ○. ○. 상속세법 제3조, 제13조, 제25조에 따라 총 상속세액금 100,000,000원을 자진 신고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액중 일부인 금 40,000,000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같은 해 3. 2. 위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금 60,000,000원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.
 - 나. 그 후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또한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어 같은 해 ○. ○ . 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법 제73

조에 따라 같은 해 ○. ○.자로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○ 피고로부터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았습니다.



2. 피고의 부과처분

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○. ○. 원고가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당초부터 연부연납 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미납부 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위 납세고지일인 같은 해 ○. ○.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.

3. 전심절차

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피고 및 국세청에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○ ○. ○. ○. 이의신청을, 같은 해 ○. ○. 심사청구를 같은 해 ○. ○.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.

4. 피고처분의 부당성

그러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비록 원고가 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에 의하여 당초 담보제공의 의사표시와 함께 한 연부연납 신청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.

5. 결론

그러므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가산세고지서

1. 갑 제2호증

연부연납신청서

1. 갑 제3호증

물납신청허가서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납부서

각 1부

1부

1부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6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